

[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전자금융사기

국민검사청구 + 분쟁조정신청

<p>모집기간</p>	<p>200명 이상 모집 시까지 무기한 접수</p>
<p>대상자</p>	<p>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하여 예금·대출사고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고피해자</p>
<p>※ 모집제한 가.부터 차.까지에 해당될 경우 청구·신청인 자격이 없습니다.</p>	<p>가.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의 경우 나. 확정판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에 대해 이미 환금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다. 금융회사들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재산피해 또는 채무피해 등의 이익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라. 사고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금융관련업법 및 제16호의 금융관련법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 경우 사.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불법 금원인 경우 아. 본인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방치했던 경우 (※ 접근매체: 전자식 카드 및 계좌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ID 및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각종 비밀번호) 자. 위 사. 또는 아.의 혐의나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인 경우 차.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사건 특례)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신용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청구·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별첨1-2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구·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p>
<p>청구·신청 방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래 #별첨3의 <작성양식(예시) 및 작성안내>를 다운로드 받아 서면을 작성합니다. ② 작성이 완료된 서면의 내용을 온라인 설문폼(https://moaform.com/q/smHdAb) 입력 및 한글파일 이메일(finance2@ccej.or.kr) 제출로서 접수받아 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③ 이상이 없으면, 청구·신청인 대표의 날인 및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한 전자문서(PDF)로 다시 이메일을 통해 회신합니다. ④ 200명 이상 청구·신청서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p>위임사무</p>	<p>#별첨1의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p>